추가 업체 요건

이러한 요건들은 당부서의 2018년 12월자 재정관리 서비스 지침 에 명시된 자율결정 프로그램(SDP) 재정관리 서비스(FMS) 제공업체 등록 요건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은 아래에 명시된 모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요건:

1. SDP FMS 제공업체로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지역센터가 해당 SDP FMS 기관의 직원들이 아래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관실(OIG)의 제외 대상 개인/기관 명단,
   - 캘리포니아 의료서비스국(DHCS) Medi-Cal 자격 정지 및 부적격 제공자 명단,
   - 타이틀 17, 섹션 54311(a)(6)에 명시된 제외 기준.

2. 최소 직원 자격 요건: SDP FMS 제공업체로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 공인 급여 전문가,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급여 처리, 원천징수, 관련 연방, 주 및 지역 고용세 및 보험 신고 및 납부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 인적 서비스 전달 시스템 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

3. 재정 건전성: SDP FMS 제공업체로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 가용 신용 한도 증빙 자료 또는 최소 $50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자본 준비금을 통해 초기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기, 절도, 오류 및 누락,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지역센터가 요구하는 보장 한도에 맞추어 제공해야 합니다.
   - 최소 6회 급여 주기 동안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보여주는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에 관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SDP FMS 제공업체로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이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나머지 요건을 제공업체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FMS 정책 요건:

SDP FMS 업체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를 담은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4. 전화, 이메일, 메일 및 기타 서신을 수신, 추적 및 회신하는 데 필요한 일정이 포함된 고객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주 및 연방 기관의 규정,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6. 참여 고용주에게 직원의 채용, 관리 및 해고와 관련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7. 지출 계획에 포함된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연방 Medicaid 기준 및 SDP 면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SDP 면제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제공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9. 2024년 4월 고용주 부담 및 기타 고용 관련 비용 지침에 명시된 고용주 부담 요건과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당부서에서 승인한 고용주 부담 비용에 따라 청구하며, 기타 고용 관련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SDP 청구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영수증 및 청구서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2024년 4월 청구 요건 지침, 2024년 1월자 서비스 청구 요건업데이트 지침, 및 2023년 12월자 서비스 청구 요건 지침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 지출 계획 및 SDP 프로그램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참여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 및 지출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서만 구매를하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해당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 따라 급여 처리, 원천 징수, 관련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 고용세 및 보험의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해야 합니다.
13. 참여자를 대신하여 매월 15일까지 참여자와 지역센터에 월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모든 의심되는 학대, 방임 또는 재정적 착취 사건을 식별하고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인 보호 서비스(APS)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CPS).
15. CMS 지침 에 따라 모든 의심되는 사기, 낭비 및 남용 사건을 식별하여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6. 자연재해, 악천후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 시에도 공급업체 대금 지급 및 급여 처리를 포함한 업무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재해 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